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유광상 의원(찬성자 9명)

나. 의안번호 : 제 1243 호

다. 발의일자 : 2016. 6. 1.

라. 회부일자 : 2016. 6. 2.

2. 제안이유

상위법령 및 현실에 맞지 않게 규정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위원의 전문성 확보 및 정책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등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공무원의 직위를 담당 실·국장 및 과장으로 변경함.(안 제5조제2항 및 제4항)

나.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연임제한을 폐지함.(안 제6조)

다.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원안참조

(2)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5) 비용추계 등의 자료 : 원안참조

5. 검토의견

■ 개요

- 본 개정안은 동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이하 '위원회') 존속기한이 관련 상위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맞지 않아 이를 삭제하는 한편,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폐지를 통해 전문성 확보 및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 물이용부담금: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강수계를 상수원으로 하는 수돗물의 수요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조례 제2조제1호)

■ 서울특별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가 한강수계관리기금 조성을 위해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에 대해 서울특별시 시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설치한 자문기관

■ 주요 조문별 검토

가. 당연직 공무원 직위명 변경에 대한 의견(안 제5조제2항 및 제4항)

- 현행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4항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물순환안전국장, 간사는 물관리정책과장(現 물순환정책과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직위를 물이용부담금 담당 실·국장과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 향후 조직개편에 따라 직위명을 반복적으로 개정해야하는 폐단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하겠음.

나. 연임제한 폐지에 대한 의견(안 제6조)

- 안 제6조는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1회 연임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표 1] 참조)

[표 1] 안 제6조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_____ _____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_____ _____ _____

-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의 제2기 위원 구성 현황([표 2] 참조)을 살펴보면, 위촉직 위원 12명 중 8명이 연임 위원으로 현행 연임제한 규정에 의거 임기만료(2017.10.20.)시 위원 절반 이상을 새로이 위촉해야 하는 상황임.

[표 2] 제2기 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위촉직 위원	당연직 위원
신규 위촉 위원	4명	1명
1회 연임 위원	8명	
계	12명	1명

※ 제2기 위원회 임기: 2015.10.21. ~ 2017.10.20.(2년)

- 이처럼 위원의 상당수가 교체될 경우, 전문성이 큰 물이용부담금 분야에 대한 인력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등 상당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며, 서울시 역시 개정안 취지에 동감하고 있음.
- 참고로, 서울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일부 유사 자문 성격의 위원회도 대부분 연임제한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표 3] 참조)

[표 3] 타 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회	운영현황	비고
서울역사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	임기2년 연임가능	자문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	임기2년 연임가능	심의·자문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임기2년 연임가능	심의·자문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연임제한 규정이 폐지될 경우 위원에 대한 연임 횟수는 전적 시장의 권한과 판단에 맡기게 되는 것으로, 자체적인 위원 연임기준(출석률, 위원회 공헌도 등)을 정립하여 특정 위원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 연임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다. 위원회 존속기한 삭제에 대한 의견(안 제12조)

- 안 제12조는 현행 조례 제12조1)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인데,

○ 일반적으로 법정 부담금은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2²⁾는 부담금 신설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환경부가 운영 중인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존속기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속기한을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전망이다.

○ 이는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상수원 수질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한시적이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가 판단했기 때문이라 이해되는데,

- 그렇다면 상위법(「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없는 존속기한을 동 조례가 자문기구인 위원회에 두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안과 같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짐.

1) 제1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5조의2(부담금 존속기한의 설정) ①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부과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그 부담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부담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3.31.]